#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병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814 발의연월일: 2020. 12. 22.

발 의 자:이병훈·송갑석·신영대

주철현 · 김승원 · 도종환

양정숙 • 이상헌 • 박 정

윤관석 · 황운하 · 남인순

이원택 • 아침(비) 의원

(14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어려운 한자어인 "향유"를 "누림"으로 바꾸고, "재료적치장"을 "재료를 쌓아두는 곳"으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,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.

#### 법률 제 호

##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향유가"를 "누림이"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"향유"를 "누림"으로 한다.

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향유"를 "누림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"문화향수"를 "문화누림"으로 한다.

제31조제3항 중 "재료적치장"을 "재료를 쌓아두는 곳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연 행	개 성 안
제10조(문화예술 진흥) ① 광주광	제10조(문화예술 진흥) ①
역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	
조성을 위한 문화예술의 연구・	
창작 및 <u>향유가</u> 활성화되도록	<u>누림이</u>
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	
야 하며,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	
있다.	
1. 문화예술 창작 및 <u>향유</u> 활성	1 <u>누립</u>
화 프로그램 지원	
2. ~ 6. (생 략)	2. ~ 6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11조(시민문화 진흥) 광주광역	제11조(시민문화 진흥)
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	
성을 위한 시민의 문화예술 <u>향</u>	<u>宁</u>
<u>유</u> 및 창조력 함양 등을 위하여	<u>림</u>
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	
야 하며,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	
있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노인·여성 및 외국인노동자	4
등 소외계층의 <u>문화향수</u> 활동	<u>문화누림</u>
지원	
5. (생 략)	5. (현행과 같음)
제31조(기초조사) ①・② (생 략)	제31조(기초조사) ①・② (현행과

③ 국가・지방자치단체 또는 조
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
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
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
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
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
토지를 <u>재료적치장</u> ·통로 또는
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
다.

④ (생 략)

같음)
③
<u>재료를 쌓아두는 곳</u>
④ (현행과 같음)